

#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5,622,045	30,168,661
일반회계	886,330,000	26,589,900
특별회계	119,292,045	3,578,761
공기업특별회계	70,601,045	2,118,031
상수도사업	38,551,813	1,156,554
하수도사업	30,022,232	900,667
대전해수욕장개발사업	2,027,000	60,810
기타특별회계	48,691,000	1,460,730
의료보호기금사업	2,153,000	64,59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220,000	66,6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8,089,000	842,67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2,456,000	73,680
주택사업	321,000	9,6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7,000	3,210
주차장설치사업	1,537,000	46,11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306,000	39,180
보령담주변지역지원사업	1,131,000	33,930
학교급식지원센터	9,371,000	281,1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4,586,262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